

Yeosu Web Contents

2023년 12월 01일 05시 44분



목차

목차	2
출생신고 안내	3
출생신고 의의	3
출생 신고 안내	3
업무개요	3
업무처리 절차	3
첨부서류 및 기타사항	4
온라인 출생신고 안내	4

출생신고 안내	사망신고 안내	혼인신고 안내	이혼신고 안내
성,본 창설 및 개명			



출생신고 의의

출생이란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모든 신분관계발생의 기초가 된다. 또한 출생신고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등록·공증하게 되므로 친자관계의 증명을 하게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자라는 추정을 받는다.

출생 신고 안내

업무개요

- 신고장소 :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(구)·읍·면사무소에 할 수 있고, 출생자의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
- 신고서 기재 방법
 - › 자녀의 성명·본·성별 및 등록기준지
 - ›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
 - ›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
 - › 부모의 성명·본·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(부 또는 모가 외국인 때에는 그 성명·출생연월일 및 국적)
 - › 자녀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된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. (대법원 규칙 정하는 범위 내 인명용 한자)
 - › 출생일시: 24시간제 (예 : 14시, 22시)
 - › 신고의무자
 -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
 -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
 - 기타 순위는 동거하는 친족, 분만에 관여한 의사,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

업무처리 절차

1단계

출생신고서 접수
(신고서 기재사항 확인- 등록기준지, 신고의무자, 과태료등)



2단계

신고서 기재
(<http://www.yeosu.go.kr>)

(출생지 읍·면·주민자치센터 →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)



3단계

주민등록지 주민자치센터에 출생사항 통보



4단계

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부여 통보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번호기재

첨부서류 및 기타사항

- 신고서 1부
- 출생증명서(의사, 조산, 기타분만참여자, 인우보증시에는 보증자 주민증사본첨부)
- 과태료 (법124조) :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, 해태자 과태료 부과

온라인 출생신고 안내

 온라인 출생신고 절차 hwp 다운로드

 정보 제공 동의서 hwp 다운로드

 참여병원 명단 hwp 다운로드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